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0

I. 조례안 개요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 가.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외 14명
- 나. 발 의 일 : 2022. 8. 12.
- 다. 회 부 일 : 2022. 9.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위해 재난 시 대피요령,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에게도 외국인주민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9호, 제7조제2항제9호)
-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을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등과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10호 및 제12호)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443,262명으로 전체 서울 시민 9,586,195명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¹⁾ 및 다문화가족²⁾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2020년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³⁾>

(단위 : 명)

총 인구수 (A)	비율 (B/A)	외국인 주민수 (B)= (C)+(D)+(E)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C)						한국 국적 취득자 (D)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E)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 타 외국인		
9,586,195	4.6%	444,443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바,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가족구성원의 국적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는 대부분 외국인주민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음.

3) (2021.11.17.)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주요내용 검토

- 동 개정안은 현행 제7조(지원의 범위)를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로 수정하고, 제7조 해당 각호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재난시 대피요령(안제7조제1항제9호, 안제7조제1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을 위한 교육·홍보(안제7조제3항) ▲다문화가족 인권옹호 등을 위한 교육·홍보(안제7조제2항제1호) ▲다문화가족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안제7조제2항제10호) ▲가정폭력 피해 입은 결혼이민자 등 보호·지원(안제7조제2항제11호) ▲신체적·정신적 등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안제7조제2항제12호) 내용을 추가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임.
- 본 개정안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각각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도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보편적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집행부도 동 개정안 발의 관련하여 서남권글로벌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등(붙임)을 운영하며 관련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7조제2항제5호와 개정안 제7조제2항제11호가 중복되어 있고 현행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와 개정안 제7조제3항가 중복되어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7조 제2항 제5호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u>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u>	제7조 제2항 제11호	<u>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u>
제7조 제1항 제1호	<u>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u>	제7조 제3항	시장은 <u>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
제7조 제2항 제1호	<u>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u>		

- 또한 동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내용에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 조문의 간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로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체 서울시민의 4.6%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범위와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내용상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하여 조문의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김종훈 입법조사관 (02-2180-8148)

붙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사업개요

○ 외국인지원시설 15개소

센터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센터 이용인원 (연인원 22.8월 기준)
합 계 (15개 시설)			170,218명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지원 : 외국인주민 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제공(13개 언어)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10개 언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서비스 ▶교육지원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등) <p>*10개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필리핀어</p>	52,691명
외국인 노동자 센터 (6개소)	소 계		36,031명
	강 동	외국인 노동자	3,636명
	금 천		6,138명
	성 동		6,532명
	성 북		6,668명
	양 천		8,068명
	은 평		4,989명
빌리지 센터 (7개소)	소 계		66,609명
	연 남	외국인 주민	7,657명
	역 삼		5,021명
	서 래		10,022명
	이태원		17,940명
	이 촌		10,425명
	성 북		4,128명
금 천	11,416명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및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지원 : 한국어 기본교육(초·중·고급), TOPIK 과정 등 운영 ▶교육 지원 : 방과후 멘토링, 학교수업 보조 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맞춤 지원 : 상담(심리,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등) ▶적응 지원 : 한국사회 이해교육, 또래문화 이해,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 등 	14,887명

○ 가족센터 26개소 : 서울시 1개소(거점센터), 자치구 25개소

센터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센터 이용인원(연인원)※ 22.8월 기준		
합 계 (26개소)						
서울시가족센터			○ 건강가정 상담 및 서울가족 학교 운영 지원	○ 네트워크구축: 총 10회, 159명 ○ 실무자교육: 총 9회, 160명 ○ 외부자원연계: 총 14회, 2,546명 ○ 한울타리 및 마이서울 앱 - 한울타리 홈페이지 : 접속 63,320명, 게시글 1,014건 - 마이서울 앱 : 접속 32,272명, 설치건 366건		
			○ 자치구센터 지원·평가, 네트워크 등 광역거점역할 강화 ○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및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외부자원 연계 등)			
자치구 가족센터	종 로	모든 가족(1인 가구, 부모, 자녀 등) (예비)다문화가족, 부부, 자녀 등	○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구		사업 영역	기본 사업	비 고	
	용 산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인시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 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보살 지원), 이혼처음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영유아 훈육가치교육, 부모갈등, 이혼처음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 상담, 전문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 개발 중인 사업 : 펠 수 사업(3개)
	성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 상담, 전문상담), 홍보 및 관리, 사례관리 등	
	광 진		가족생활	만별이 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동 대문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동아리), 다문화가족은·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이차개척민 공동체이전, 가족지원문화교류프로그램, 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임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중 량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성 북		사업명	사업내용		
	강 북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실시		
	도 봉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노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신규입국 및 가정폭력 비극, 전부모족 등 위기 다문화가족 사례 발굴 및 차원연계 등 사례관리		
	은 평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서 대문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마 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		
	양 천		※ 다문화가족 별도추진사업			
	강 서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구 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류 활동 장소 제공	9개소 (중구, 성동, 동대문, 서대문, 구로, 관악)	
	금 천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임 사업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25개소	
	영 등포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6개소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구로, 영등포)	
	동 작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대상 취학준비 학습지원	10개소 (종로, 중구,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영등포, 송파, 강동)	
관 약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 이주여성 지원시설 :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7개소 (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단위 : 명)

구 분		시 설 명	비 고
합 계		9개소	
위기이주여성	상담센터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p>(대상) 다양한 사유(폭력 등)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등</p> <p>(기능) <u>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긴급보호시설 운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심리치료, 집단상담 등) - 통번역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제공) - 긴급보호시설(쉼터) 운영 <p>※ 산하 긴급보호시설 '한○○쉼터' 운영 (3개월 보호, 1회 연장가능, 비공개시설)</p>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1)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p>(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p> <p>(기능) <u>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상담, 의료·법률 지원 - 긴급피난처 연계 등
	보호 시설 (7)	쉼터(4) *비공개시설	<p>(대상) 긴급한 일시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p> <p>(기능) <u>단기보호 및 숙식제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p>(보호기간) 2년 이내</p>
		그룹홈(2) *비공개시설	<p>(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자로서 <u>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u>)</p> <p>(기능) <u>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기초 생활 지원,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등</u></p> <p>(보호기간) 2년 이내</p>
		자활지원센터(1) *비공개시설	<p>(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자로서 <u>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u>)</p> <p>(기능) <u>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u></p> <p>(보호기간) 2년 이내</p>